

## 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2차 공고

우리 중소기업·중견기업 등의 특허·실용신안권·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「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.

2026. 4. 1.

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

### 1. 사업 개요

□ 사업목적: 국내 중소기업·중견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

□ 지원유형 및 규모

- 지원유형: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
- 지원규모: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~70% 지원

| 구분        |      | 지원 유형   | 모집방식                   | 지원대상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분쟁방어      | 초기대응 | 특허침해분석(FTO*분석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기                     | 국내기업<br>협단체**<br>대학·공공연*** | 개별대응<br>또는<br>공동대응 |
|           |      |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사후대응 | 특허보증  | 수시<br>(Fast Track****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     | 경고장 대응전략<br>소송 방어전략<br>라이선스 협상전략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권리행사      | 초기대응 | 특허피침해모니터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기                     | 국내기업<br>대학·공공연             | 개별대응<br>또는<br>공동대응 |
|           |      | 특허피침해분석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사후대응 | 특허권행사(경고장 발송, 침해 제소)<br>특허권보호(이의신청, 무효·취소심판 대응) | 수시<br>(Fast Track)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영업비밀 분쟁대응 |      | 영업비밀 분쟁대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기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별대응               |

\* FTO(Freedom-to-Operate): 자유실시 여부 또는 특허 침해 분석

\*\* 협단체는 공동대응 또는 개별대응의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(NPE 위험특허 대응)인 경우만 지원

\*\*\* 대학·공공연은 분쟁방어 전략의 경우 초기대응(특허침해분석) 유형만 지원

\*\*\*\* Fast Track: 시급을 요하는 분쟁대응 신청건의 선정절차를 단축 운영하는 제도(평균 14일 이내)

□ 지원 대상(이하 '지원기업'으로 통칭)

○ 국내기업

- 개별대응: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(위협)이 있는 국내 중소·중견 기업
- 공동대응: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(다만, 중소·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)
- \* 협·단체가 공동대응 참여 시 2개社 이상으로 협의체 구성 가능

○ 협·단체

- 해외 NPE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·단체

○ 대학·공공연

- 개별대응: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(위협)이 있는 국내 소재 대학·공공연
- 공동대응: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 발생(예상)한 특허권을 공동출원 및 소유한 국내 소재 대학·공공연 및 국내기업(다만, 대학공공연, 중소·중견기업, 협·단체가 과반수일 것)

지원  
대상

• 중소·중견기업 범위

- 『중소기업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기업. 개인사업자 포함
- 『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』 제2조에 따른 기업

• 대학·공공연 범위

- 『지식재산 기본법』 제3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
- 『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』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
- 『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』 제36조의2 또는 『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』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

### <2026년 주요변경사항>

| 변경사항    | '25  | '26  |
|---------|--|--|
| 지원대상 확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특허침해분석</li> <li>국내기업 신청 가능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특허침해분석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학·공공연도 신청 가능(소속 교직원·연구원의 기술창업 사항에 한해 지원, 기술창업 추진 내용·대상제품·기술 특정 필요)</li> </ul> </li> </ul>   |
| 지원범위 확대 | 신규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(신규) 특허피침해 모니터링 유형 신설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외특허 피침해 정황이 있는 대학·공공연 및 기업</li> </ul> </li> <li><b>(신규) 영업비밀 분쟁대응 전략 유형 신설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영업비밀 해외 유출정황이 명확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청 가능(증빙자료 제출 필요)</li> </ul> </li> </ul>  |
| 지원강화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가전략기술·소부장 분야 가점 5점 부여</li> </ul>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국가전략기술·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26년도 전체 지원 건수의 30% 이상을 국가 전략기술·첨단전략산업 분야로 선정(쿼터제)</li> <li>가점 5점 부여 및 선정평가 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, 국가전략기술·첨단전략산업 분야 우선선정</li> <li>(초기대응) 연 3회 지원 가능</li> <li>(사후대응) 연 4회/연 최대 3억원/4년간 연속지원 가능</li> <li>* 동일내용으로는 연속·다회차 지원 불가</li> </ul> </li> <li><b>NST 출연(연) 전용 특허피침해모니터링 공고 운영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대학·공공연 및 기업은 일반 특허피침해모니터링 공고로 사업 신청 가능</li> </ul> </li> </ul> |

## 2. 지원 상세

### 가.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

#### □ 분쟁방어 유형

(단위: 백만원, 건·회당 기준)

| 구분    | 유형        |       | 지원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총사업비(최대) |        | 지원 조건<br>(필수서류)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별       | 공동*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초기 대응 | 특허침해분석**  |       |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       | 20       | 38     |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사전대비 전략   | A/B/C | 특허침해 분석, 특허분쟁위험 대응***               | 35       | 50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| N     | NPE 위험특허 대응****                     | 15       | -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후 대응 | 특허보증      | A     | 특허침해 보증 대응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       | 50     |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+ 특허보증 요청 증빙     |
|       |           | B     | 공급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 경고장 수신 시 또는 소송 대응전략  | 50/100   | 100    | 경고장 또는 소장 사본 + 특허보증 요청 이행 증빙 |
|       | 경고장 대응전략  |       |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| 50       | 70(85) | 경고장 사본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소송 방어전략   |       | 특허소송 대응전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   | 100    | 소장 사본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라이선스 협상전략 |       |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                     | 50       | 65     | 라이선스 계약서 사본                  |

\* '공동대응'의 총사업비는 협의체 당 3社 기준이며, 경고장 대응전략(표준특허)유형은 건당 최대 85백만원

\*\* 대학·공공연은 특허침해분석(FTO) 전략 신청 시 대상제품에 대한 기술창업(준비) 관련 증빙 필요

\*\*\* 선택과업 중 무효분석, 회피설계, 역공격전략 중 1개 이상 선택조건

\*\*\*\* NPE 위험특허 대응전략 지원의 총사업비는 건당 최대 15백만원

## □ 권리행사 유형

(단위: 백만원, 건·회당 기준)

| 구분    | 유형      | 지원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총사업비(최대) | 지원 조건<br>(필수서류) |
|-------|---------|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      |         |  | 개별·공동*   |                 |
| 초기 대응 | 피침해모니터링 | 핵심 해외특허에 대한 침해해 모니터링 및 침해 증거 수집            | 40/60**  | 핵심해외특허 증빙       |
|       | 특허침해분석  |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상제품의 침해해분석          | 20       | 피침해 예상 증빙       |
| 사후 대응 | 특허권 행사  |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행사(경고장, 소송 등) 전략 | 100      | 피침해 증빙          |
|       | 특허권 보호  | 자사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, 무효·취소심판 대응전략               | 40       | 이의, 심판 청구서 사본   |

\* 대학이나 공공연구에 포함된 공동 특허권자

\*\* 대학·공공연구 최대 6천만원(분석대상특허 최대 10건)/기업 최대 4천만원(분석대상특허 최대 7건)

## □ 영업비밀 유형

(단위: 백만원, 건·회당 기준)

| 유형        | 지원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총사업비(최대) | 지원 조건<br>(필수서류)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영업비밀 분쟁대응 | 영업비밀 침해 관련 법적 증거 확보 및 분쟁 대응 법률 지원 | 100      | 영업비밀 해외 유출(정황)* 및 영업비밀 분쟁 관련 증빙 |

\* 분쟁대상은 기업에 한함(영업비밀 유출한 개인에 대한 분쟁대응 사안은 지원 불가)

## 나. 지원 범위

### □ 유형·대상별 지원 비율

| 구분     |         | 정부 지원 비율<br>(총사업비 중) | 기업 부담 비율 |       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
|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현금       | 현물*    |
| 개별 대응  | 소기업     | 70%                  | 10% 이상   | 20% 이하 |
|        | 중기업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20% 이상   | 10% 이하 |
|        | 중견기업    | 50%                  | 30% 이상   | 20% 이하 |
|        | 협·단체    | 70%                  | -        | 30%    |
|        | 대학·공공연구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
| 공동대응**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

\*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

\*\* '공동대응'의 기업 부담 비율은 참여기업 모두 포함해야 하며 기업 간 조정이 가능하고, 정부 지원 및 기업 부담 비율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## □ 연속·동시 지원

- 지원대상: 기 지원기업 중에서 동일·유사한 분쟁 현안이 지속되거나 분쟁이 확대되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
- 지원범위: 최대 3년간\* 연 4회\*\* 이내 연속·동시지원 가능
  - \*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이내(총 사업비 기준)
  - \*\* 국가전략기술·첨단전략산업의 경우 최대 4년간 연 4회, 연간 합산 최대 3억원 이내

## 3. 신청 기간 및 방법

### □ 신청 기간 및 결과 통보

| 구분    | 정기모집(2차)   | 수시모집(Fast Track )      |
|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청 기간 | '26. 4. 1.(수) ~ 4. 21.(화) 18:00  | 연중(공고일~연말)             |
| 결과 통보 | 모집 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 | 신청 완료 후 14일 이내(영업일 기준) |
| 비고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신청 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사업시스템상에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으로 인정함</li><li>• 수시모집은 정기모집과 상관없이 수시로 접수하며, 매월 10일 및 25일까지 신청·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월 2회 선정심사 실시</li><li>•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고지함</li></ul> |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□ 신청 방법

- 사업관리시스템(<https://www.ip-navi.or.kr/ipdrms>)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(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[붙임4] 참조)
  - \* 모든 제출서류는 PDF 형태로만 업로드 가능하며 여러 파일을 올리거나 할 경우 PDF로 병합하여 업로드

○ 신청기업(국내기업)

**【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】**

| 구분             | 제출서류   | 일반 신청     |           | 간소화 신청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제출 방법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|  | 필수        | 해당 시      | 필수        | 해당 시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신청서            |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<br>(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)  | ○         |           | ○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온라인<br>입력        |
| 간소화            |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[붙임2-3]  |           |           | ○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시스템<br>파일<br>업로드 |
| 추가<br>제출<br>서류 | 1. 기업규모 증명서(중소, 중견) [붙임1 별첨4] 참조<br>* 협업체 참여기업 중 대기업 및 단체 제출 불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|           | 서비스<br>이용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2. 사업자등록증(명원) 3개월 이내<br>*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(업력 확인용)  | ○         |           | 서비스<br>이용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3. 대상제품 설명 자료 [붙임1 별첨4] 참조<br>* 영업비밀 분쟁대응의 경우 회사 소개자료 제출   | ○         |           | ○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4. 대상제품 판매 자료 [붙임1 별첨4] 참조   | ○         |           | ○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5. 수출 증빙자료(예정자료 포함) [붙임1 별첨4] 참조   |           | ○         |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6.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[붙임2-4] 참조<br>* 간소화 신청시 해외 특허권 보유자료 선택 제출<br>** 영업비밀 분쟁대응의 경우 영업비밀 관리증빙[붙임2-6] 제출 | ○<br>공동대응 | ○<br>개별대응 |           | 서비스 이용<br>및<br>제출(해외)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7.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[붙임1] 참조-  | ○         |           | ○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8. 가점 관련 증빙서류 [붙임1 별첨1] 참조   |           | ○         |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
○ 신청기관(협·단체/대학·공공연)

**【신청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】**

| 구분       | 제출서류   | 협·단체 | 대학·공공연 | 제출방법             |
|----------|--|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제출<br>서류 | 1.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<br>(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)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○      | 온라인<br>입력        |
|          | 2. 지원사업 활용계획서<br>(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)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○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3. 사업자등록증(명원) 3개월 이내<br>*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(업력 확인용)            | ○    | ○      | 시스템<br>파일<br>업로드 |
|          | 4. 국내·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[붙임2-4] 참조<br>* 간소화 신청 시 해외 특허권 보유자료 선택 제출 |      | ○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5.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[붙임1] 참조   |      | ○      |                  |

○ 수행기관

**【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】**

| 구분                   | 제출서류  | 필수 | 해당 시 | 제출방법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수행<br>기관<br>신청<br>서류 | 1. 사업수행 신청서 및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<br>(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)   | ○  |      | 온라인<br>입력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2. 산출내역서(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)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|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3. 사업자등록증(명원) 3개월 이내<br>*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(업력 확인용) | ○  |      | 시스템<br>파일<br>업로드 |
|                      | 4. 사업수행 제안서 [붙임2-1]<br>* 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포함            | ○  |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5. 제안서 발표자료(수시공고 신청 시 제출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○    |                  |

\* 공모과제는 별도 안내

## 4. 세부 운영계획

### 가.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 선정([붙임1] 참조)

#### □ 선정심사 방법

- 지정: 신청기업·협업체 등이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할 경우 수행기관과 동시에 선정심사 진행
- 공모: 수행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신청기업 등은 선정 후 전문기관 POOL 내에서 수행기관을 공모하여 선정

|       |  |
|-------|--|
| 참고 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수행기관은 지정, 공모과제 신청 시 반드시 '전문기관 POOL'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</li><li>• 수행기관을 지정하지 못한 기업 등의 추천 요청 시 전년도 해당 기술분야 종합평가 우수 수행기관(S, A 등급) 안내 지원(ipkoipa@koipa.re.kr로 요청)</li></ul> |
|-------|--|

#### □ 선정기준

- 신청기관: 신청기업·협업체 등의 선정심사 평균 평점 80점 이상
- 수행기관: 선정심사 평균 평점 80점 이상
  - \* 공모과제인 경우 9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입찰가격(10점)을 합산하여 평가하되, 기술점수 76.5점 이상(90점 만점)만 협상 대상 적격자로 인정

|       |   |
|-------|---|
| 참고 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수행기관 심사 기준 미달 시 지원기업에 '지정 수행기관 유지·변경 요청서'를 요청하고, 수행기관 변경 권고에도 유지를 희망할 경우 최종 선정 가능. 단 해당 과제는 집중관리 예정</li></ul> |
|-------|---|

#### □ 심사결과확인: 관리시스템(<https://www.ip-navi.or.kr/ipdrms>) 내 '지원기업 협약관리'에서 확인

- 지정과제의 제안 사업비는 최대 총사업비 내에서 기준단가 및 예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
- 공모과제 수행기관 협상 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기준단가 및 예산 한도액 범위 내에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

## 나. 신청 시 유의사항(필독)

### □ 신청기업 지원불가 사유

- ① 휴·폐업 기업
-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·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(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)
- ③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 지점, 사무소 등인 경우(단,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)
- ④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
- ⑤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·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(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)
- ⑥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·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(단, 대학·공공연은 지원 가능)
- ⑦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계획·사업수행계획서 등의 지원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

### □ 수행기관 선정 불가 사유

- ① 과제별 수행인력이 6인을 초과하거나, 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총 인건비율의 20%를 초과하는 경우
- ② 과제 수행기간 중 동일 수행인력의 우리원 지원사업 투입을 합계가 100%를 초과하는 경우

- ③ 수행기관에 재직하지 않는 외부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(선정심사 시,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선정 가능)
- ④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 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
- ⑤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·해지한 경우
- ⑥ 신청일 기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입찰·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

< 기업 비밀정보 보호 >

-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 등을 지원기업의 허락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
-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한 성과 등 본 사업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지원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함. 다만, 중간 및 최종보고회에서 보고하거나 지식재산처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본 사업의 정책보고서의 작성, 국회 또는 관련 정부부처의 감사, 자료제출요구 등의 이유로 보고하는 경우 '비실명화' 후 제공할 수 있음

□ 기타 주의사항

○ 해당 사유 발생 시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 참여 제한

-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(최대 3년)
-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·해지하는 경우(최대 3년)
- 당해 연도 경고 조치를 3회 이상 받았거나, 수행기관 종합평가 등급이 연속 2년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고, 종합평가 결과가 80점 미만인 수행기관의 동일 수행분야 신청인 경우
  - \* 매년 말 연간 수행과제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통해 수행기관 등급 부여
- 최근 5년 내 연속으로 사업 참여 제한 3년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(영구)
  - \* 부당한 거래행위 확인 시 해당 과제 책임연구원도 최대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함
- 기타 협약사항 위반 시 해당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 참여가 제한됨

○ (위탁정산) 수행기관은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서 정산 진행 및 정산비용 납부

\* 위탁정산비용은 과제별 150,000원(VAT 미포함)으로 경비에 포함 필수, 추후 별도 안내

○ (자료 제출 거부 시 제재조치) 보호원의 지원사업 결과물 평가 시 주요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

○ (부정 목적의 활용 제한) 과업 추진 전후 또는 진행 중 동 사업을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될 시 협약의 해제·해지 가능

○ (부정행위 등 제재조치)

- 정부지원금, 기업부담금 등과 관련하여 신청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당한 거래가 있을 경우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조치함

-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

- 지원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 시 환수 조치

※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, 부정신청, 기타 부정행위 시 손해배상, 부당이득반환,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, 정부기관(국회, 감사원, 지식재산처, 변리사 징계위원회 등)에의 부정행위 적발 사실 통보 등 가능

※ 공공재정환수법(2020.1.1. 시행)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, 부정이익 환수, 제재 부과금 부과(최대 5배), 고액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등 가능

○ (연락체계 유지 및 분쟁경과 공유) 본 과업종료 후 3년간 지식재산보호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, 분쟁종료 등 경과에 대해 공유토록 노력할 것(미협조 시 감점 부여 가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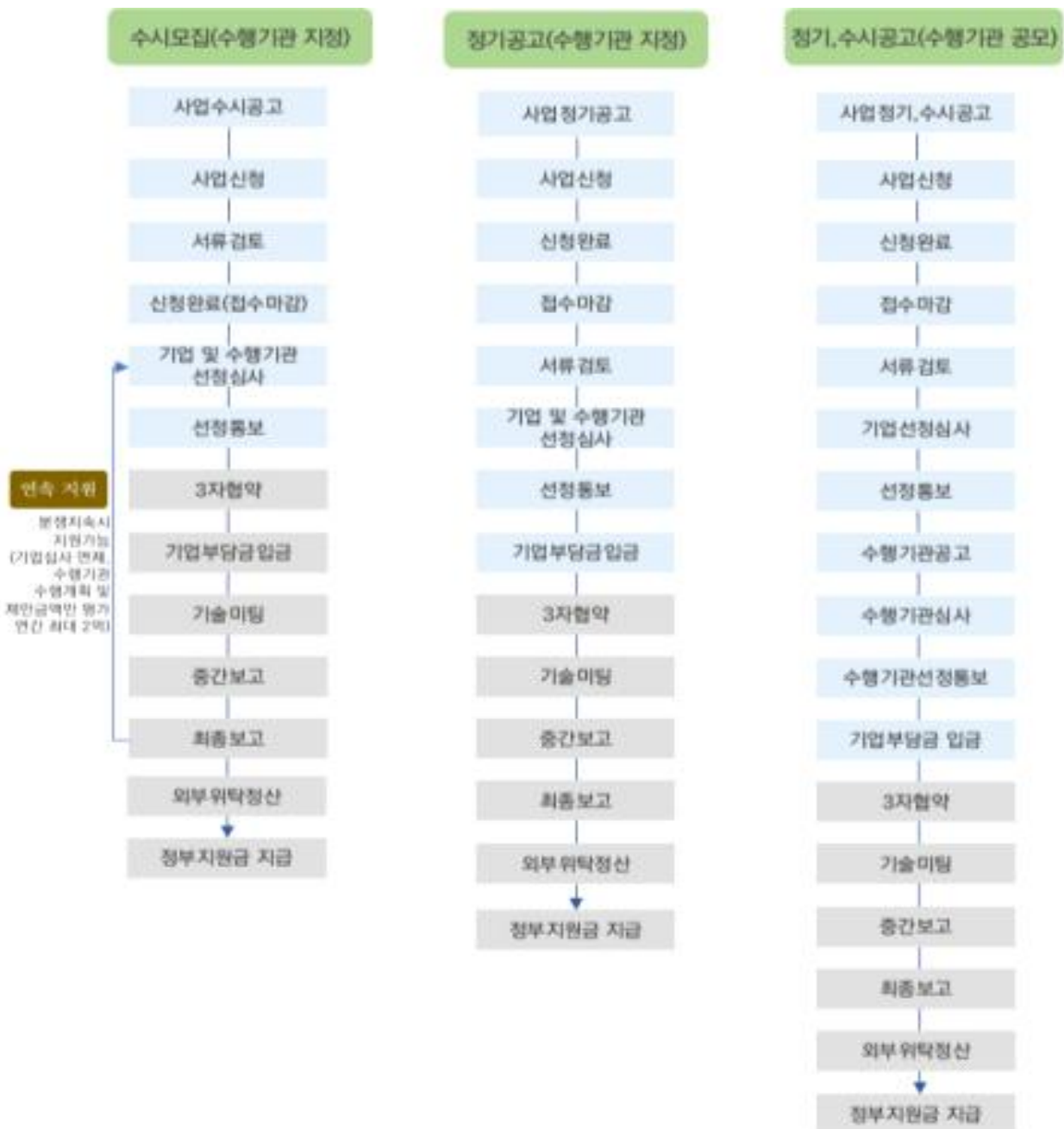
○ (수행인력 변경) 수행인력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업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3주 이내 인력 변경 신청 및 승인을 득해야 함\*(단, 변경 사유 발생일이 협약기간 만료 2주 이내일 경우에는 협약종료 전일까지로 함)

\* 변경 신청기간 도과 시 해당 인원의 인건비는 사업비 정산에서 제외함

○ (외부자문 활용)

- 법인이 분리된 계열사의 외부 자문 시 물적 구분 등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함
- 변리사 개인이 아닌 소속 특허법인(사무소)과 계약 체결 및 정산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

다. 모집 및 수행기관 결정 방식에 따른 지원 절차



## 라. 지원사업 및 신청 문의처

| 구분                | 세부 분야        | 담당자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업내용<br>(유형 문의 등) | IT분야         | 02-2183-5874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기계분야         | 02-2183-5875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전자분야         | 02-2183-5876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화학분야         | 02-2183-5878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영업비밀분야       | 02-6196-2025               |
| 행정                | 신청 및 선정절차    | 02-2183-5882~6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 | 02-2183-5885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온라인 신청(시스템)  | 02-2183-5882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정산 관련        | 02-2183-5886               |
| 기타                | 이메일 문의       | <b>ipkoipa@koipa.re.kr</b> |

\*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, 방문 및 우편 신청 불가

|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<b>통합지원<br/>사업설명회</b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일시) 2026.3.5.(목) 14:00~17:00</li> <li>• (장소) 과학기술컨벤션센터 대회의실(지하 1층)</li> </ul>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|

**[붙임1]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**

**[붙임2]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신청 양식**

**[붙임3]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과업지시서**

**[붙임4]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**